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5-183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1
2025-184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16
2025-185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186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25-187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29
2025-188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5-189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9
2025-190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25-191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7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83
----------	----------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거창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포상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제4조)
- 다.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에 대해 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포상방법, 포상 추천 등에 대해 정함(안 제8조~제11조)
- 마. 공적심사위원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2조~18조)
- 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취소 등에 대해 정함(안 제19조~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상훈법」 제8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 「정부표창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2025. 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시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군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할 수 있다.

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3.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또는 선행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사람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관내 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적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 대상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을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 및 방침과의 부합성
 -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 3. 표창에 따른 사회·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 4. 공적발생시기와 표창시기의 적정성
- ② 제1항의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16조(중복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8조(포상취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4. 같은 공적으로 또는 사유로 중복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여 대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또는 패나 부상의 훼손·분실 등으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사실을 표시하는 명칭(이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지역의 문화예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비영리 행사로 본다.
- ④ 제1항의 행사 주최자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4.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경우
 2.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후원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의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즉시 사용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 창 장

제 호

주소 또는 소속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제 호

주소 또는 소속직

성명

(감사문)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

제 호

주소 또는 소속직
성명

(상문)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명	(한자)										
② 생년월일							③ 군번 (군인의 경우)				
④ 본적 (국적)											
⑤ 주소											
⑥ 직업					⑦ 소속						
⑧ 직위					⑨ 등급(직급·계급)			⑩ 근무기간(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적분야코드			-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사자											
⑮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후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내 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별지 제6호서식]

거창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기관 · 단체	명 칭				
	소재지				
	전 화		FAX		E-mail 전자우편
	대표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기 간				
	장 소				
	행 사 목 적				
	주요행사내용				
	주최(주관)기관명				
	후원예정 기관명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거창군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의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안전관리계획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일 시 (기 간)	일 시 (기 간)		장 소	
행 사 기 관	주 최 (주 관)		후 원	
참 여 인 원				
후 원 받은 내용	※ 후원명칭 사용 내용			
행 사 세 부 내 용	※ 행사 진행 경과, 심사 절차(방법), 수상자 명단, 참가 현황 등			
특 기 사 항	※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한 내용, 안전 사고 유무,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 사항 등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84
----------	----------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9조 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2025. 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85
----------	----------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신중양, 이재운,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특이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안 제7조)
- 나. 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안 제8조)
- 다.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9조)
- 라.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민원소통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비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5. 전수녹음(송신인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내용 녹취를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운영, 1회당 전화·면담 권장시간 운영
6. 폭언·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해야 한다.

1. 장시간·반복·폭언·성희롱 민원상담: 종료 기준
2. 흉기소지, 폭언·폭행, 반복 민원제기 등 공무방해: 출입 제한·퇴거 기준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마련해야 한다.</u></p>	<p><u>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 벨 설치</u> <u>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u> <u>3.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비치</u> <u>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u> <u>5. 전수녹음(송신인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내용 녹취를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운영, 1회당 전화·면담 권장시간 운영</u> <u>6. 폭언·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u> <u>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u> <p><u>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장시간·반복·폭언·성희롱 민원 상담: 종료 기준</u> <u>2. 흥기소지, 폭언·폭행, 반복 민원제기 등 공무방해: 출입 제한·퇴거 기준</u> <p><u>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u></p>
<u><신 설></u>	
<u><신 설></u>	

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안전시설·장비 등 마련, 위법행위 발생 시 대응 지원
- 나. 관련 조문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안 제7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9조 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나. 관련된 안전장비 등은 구비되어 있어 향후 관리 및 교체 시에만 비용이 발생되며 위법행위 대응 지원도 발생 시 연평균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86
----------	----------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신중양, 이재운,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라.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문화예술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

다)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①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군 소재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군수는 군의 역사적 ·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영상을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가구 지원과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위기가구의 발굴 및 발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기가구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2. ~ 2025. 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이하 “사회보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군수는 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하 “복지 사각지대”라 한다)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발굴대상) 제3조에 따른 발굴대상 위기가구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④ 같은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군수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이 신고자인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나. 관련 조문: 군수의 책무(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합계
세출	군비	1,000	1,000	1,000	1,000	5,000
	소계(a)	1,000	1,000	1,000	1,000	5,000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금 지급 : 1,000,000원

4. 부서의견 : 포상금 상한(1인 연 30만원) 및 건당 지급액(5만원)을 고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약 15건 내외의 발굴 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여 제도 운영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88
----------	----------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제 공되는 목욕비 및 이·미용 효도권 지원 사업의 이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도권 지원 사업 이용자 나이 확대 85세→75세(안 제7조의2제1항)
- 나.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85세”를 “75세”로 한다.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p> <p>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p> <p>② 군수는 <u>제10조제1항제1호</u>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u>제10조제1항제1호</u>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u>85세</u>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p> <p>④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u>제10조제1항제1호</u>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p> <p>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p> <p>② 군수는 <u>제10조제1호</u>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u>제10조제1호</u>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u>75세</u>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p> <p>④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u>제10조제1호</u>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p>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항삭제 2024.7.10.)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항삭제 2024.7.10.)

붙임 1 비용추계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효도권 지원이용자 나이 확대 85세→75세

나. 관련조문 : 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 효도권 바우처 : 만85세 이상 보훈대상자(참전 유족 명예수당 대상)에 아파용 바우처 연252천원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가 확보 예산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합계
군비	50	51	52	53	54	26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당초 확보예산 : 144,396천원

$$- 21,000\text{원} \times 573\text{명} \times 12\text{월} = 144,396,000\text{원}$$

가. 나이확대로 인한 효도권 지원 : 50,000천원

$$= 381\text{명} \text{ 추가수혜자 발생} (\text{참전 명예수당 지급자}) \times \text{연252천원}$$

※ 확보예산과 지원 대상자의 실제 사용률(75%~85%), 사망자 등을 고려한 비용 추계

- 대상 : 관내 만7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참전, 유족 명예 수당 지원 대상)

- 기간 : 지원기준 대상자 사망시까지

- 금액 : 1인당 연252천원 ※ 분기별 63천원 지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89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이홍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06 ~ 11.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과 존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 · 합성 · 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 · 소지 · 구입 · 저장하는 행위
3.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유포 · 소지하는 등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피해자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과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거창군 여성 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나. 관련 조문: 군수의 책무(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합계
세출	군비	100,000	103,000	106,090	109,272	112,550	
	소계(a)	100,000	103,000	106,090	109,272	112,550	

* 최근 5년간(2020~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반영(3%)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인건비 2명 : 78,485,000원
- 가정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활동 사업비 : 6,000,000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541,770원
- 운영비 : 8,000,000원

4. 부서의견 : 기존 군비 100,000천원 투입으로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소는 디지털성범죄까지 대응이 가능, 별도의 추가 비용 불필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연평균 약 3%)에 따른 인건비 증가 는 반영필요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90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소규모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를 통해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하게 양성화해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각종 지원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돼지나 가금류 등의 거리 규정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이격 거리 중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0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안 별표 개정)
- 나.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800미터 이내인 거리 규정을 1,000 미터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안 별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06. ~ 11.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말: 200미터 이내- 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 300미터 이내(다만, 가축사육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00미터 이내)-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000미터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

가.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미만 시설 포함

나. “면적”은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접 또는 근접한 부지(직선 거리 50m 이내 포함)에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창군 기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조례 변경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변경 작성 용역 시행이 필요

나. 관련 조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6)	2차연도 (2027)	3차연도 (2028)	4차연도 (2029)	5차연도 (2030)	합계
군비	22	-	-	-	-	22

※ 2026년 1회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필요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변경 작성 용역 시행 : 22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표 정 애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91
----------	----------

발의일자	2025. 11. 24.
발의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바둑은 세대 간 교류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두뇌 스포츠로서, 바둑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다. 바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바둑진흥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체육시설사업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바둑 진흥과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 · 교육 · 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3. 거창군민 대상 바둑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바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
- ▶ 관련 조문 : 안 제5조(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향후 사업추진 필요시 예산편성

4.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최 채 환